

[별표 2]

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1.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은 기본장비와 선택장비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단독장비와 공동장비로 구분한다.

가. 기본장비: 소방기관에서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비를 말한다.

나. 선택장비: 소방기관, 재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보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

2.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는 기준

단독장비 및 공동장비의 기준 기본장비 및 선택장비의 기준		단독장비	공동장비
기본장비	① 소방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 ② 소방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 ③ 소방기관의 특성상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 ④ 장비의 본질적 기능이 다른 장비로 대체가 어려운 장비	① 개인별 신체적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착용해야 하는 장비 ② 개인위생·안전에 단독으로 활용이 필요한 장비	① 소방 활동에 2인 이상이 운용해야 하는 장비 ② 단독장비 중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비
선택장비	① 장비의 본질적 기능이 소방 활동에 보조적 기능을 하는 장비 ② 기본장비 중 사용빈도가 적고 고가인 장비 ③ 장비의 본질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비가 있거나 대원의 기술적 훈련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장비	③ 장비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할 장비로 단독으로 관리가 필요한 장비	③ 단독장비 중 고가의 장비로 활용도 및 예산을 고려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장비

<비고> 소방장비별 기본장비를 정하기 위한 세부기준

1. 구급장비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6에서 정하는 장비 및 감염병 환자 대응에 필요한 개인 보호장비. 다만, 선택장비 중 기본장비의 기능 및 성능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경우 기본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.

2. 정보통신장비

119신고접수·출동지령·관제에 필요한 장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중화 구성이 필요한 장비